

양승현 연구위원

### 요 약

최근 1년간 총 9건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이며 그 중 5건이 소관위 심사를 마친 상태임. 주요 내용으로는 금리인하요구권 등 관련 설명의무 도입, 금융취약계층 보호 강화, 상호금융권역으로 법 적용대상 확대, 신용보험 권유 허용, 횡재성 초과수익에 대한 기여금 부과징수, 화상통화 판매규제 등이 있음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현재<sup>1)</sup>까지 발의된 개정안은 총 35건으로 이중 올해 6월 공포된 개정안 1건을 제외한 나머지 34건이 국회에 계류 중인바, 이 중 최근 1년간 새로 발의된 개정안은 총 9건임
  - 법 제정 직후인 2020년에는 사후적 규제장치나 영업행위 규제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들이 주를 이루었다면<sup>2)</sup> 2021년과 2022년에는 코로나19 상황, 고령화, 고금리 지속, 가계부채 등 금융을 둘러싼 제반 사회환경변화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개정안들이 발의됨<sup>3)</sup>
    - 그중 금융상품 방문·전화판매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sup>4)</sup>이 유일하게 올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었는데,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입법이었음
  - 이하에서는 2023년 발의된 개정안<sup>5)</sup>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함
- 금융위원회에 금융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시책 수립·시행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됨(최승재 의원안, 제2119010호)
  - 제안 취지는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금융범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적극적 교육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금융범죄 피해 대응도 현행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금융교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법률이 다양한데 금융위원회가 일률적 시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함<sup>6)</sup>

1) 2023. 12. 13. 현재 기준임

2) 양승현(2020),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KIRI 보험법리뷰』, 제7호

3) 양승현(2021),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KIRI 보험법리뷰』, 제14호; 양승현(2022), 「2022년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KIRI 보험법리뷰』, 제20호

4) 방문판매원 명부관리(법 제16조의2), 전화권유 수신거부의사 등록 시스템 마련, 야간 방문연락 금지(법 제21조의2), 전속관할(법 제66조의2) 등의 내용이 포함됨(2023. 7. 11. 법률 제19532호로 개정되어 2023. 10. 12.부터 시행)

5) 2022. 12. 15.~2023. 12. 13.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말함

○ 설명의무 대상에 금리인하요구권(대출성 상품 관련) 및 개인신용정보무료열람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됨(양정숙 의원안, 제2119368호)

- 금리인하요구권<sup>7)</sup> 및 개인신용정보무료열람권<sup>8)</sup>은 금융소비자의 법적 권리임에도 그 행사 건수가 저조한바, 금융상품판매업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이를 설명하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대해 금융당국 및 업계는 개정안의 필요성 및 현행법 체계와의 관계, 소비자 편익 등 측면에서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임<sup>9)</sup>
  -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해서는 이미 개별법에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추가 규율의 실익이 낮고 중복 규제에 따른 혼선이 우려되는 데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는 실제 대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필요한 것이므로 판매시 적용되는 설명의무에 포함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임
  - 또한 개인신용정보열람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님에도 판매업자가 무료열람권에 대해 안내하면 (서비스 제공 주체에 대해) 소비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고, 설명의무는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대상에 금융상품과 관련성이 낮은 무료열람권을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 등이 제시됨

○ 금융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안전과 피해방지를 위한 개정안(박재호 의원안, 제2120428호)이 발의됨

- (보호대상) 본 개정안은 2022년 고령금융소비자 보호를 내용으로 하여 발의된 4건의 개정안<sup>10)</sup>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보호대상을 노인 외에 미성년자, 장애인, 외국인 등으로 확대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음
- (차별금지) 현행법 제15조는 성별, 학력, 장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에 더해 '연령, 국적, 재산'을 이유로 한 차별도 금지대상에 추가함
  - '재산'과 '국적'에 대해 금융당국과 업계는 이견을 제시한바,<sup>11)</sup> 외국인의 경우 금융거래에서 내국인과 다르게 규제할 필요가 있을 수 있고,<sup>12)</sup> 판매업자 등은 소비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적합한 계약을 권유해야 하며, 고액자산가 특화 금융서비스 제공, 신용평가 등 현실적으로 재산에 따른 차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임
  - '연령'에 대해 과거 같은 내용의 개정안<sup>13)</sup>이 발의됐을 때 연령은 보험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로 그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바 보장성 상품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소비자 간에 차등을 둘 수 있으므로 상기와 같은 경우는

6) 고상근(202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 <금융범죄 피해예방 교육시책 수립·시행 의무 부여 등>』, 국회 정무위원회, pp. 10~11

7) 대출 후 차주의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보험업법 제110조의3을 비롯하여 은행법 제30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 등 금융업권 별로 규제하고 있음

8) 개인신용정보주체가 연 3회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대해 개인신용평점 등 신용정보를 무료로 교부·열람할 수 있는 권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를 말함

9) 고상근(202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 <설명 의무에 금리인하요구권·개인신용정보무료열람권 추가>』, 국회 정무위원회, pp. 10~12

10) 홍성국 의원안(제2115381호), 이상헌 의원안(제2115528호), 최형두 의원안(제2116081호) 및 임종성 의원안(제2116356호)

11) 고상근(202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차별금지 및 보호 규정>』, 국회 정무위원회, pp. 4~6

12) 예컨대, 국제법상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이 우리 국민의 자국 내 금융거래를 규제하는 경우에는 해당국민에게 동등한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며, 그 밖에도 금융상품 취득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음(고상근(202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차별금지 및 보호 규정>』, 국회 정무위원회, pp. 4~5)

13) 홍성국 의원안(제2115381호), 임종성 의원안(제2116356호)

문제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도 존재할 수 있음<sup>14)</sup>

- (정책수립) 금융위원회에 금융취약계층(노인, 미성년자, 장애인, 외국인 등)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해 판매업자등에 대해 금융피해사례 및 의심사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내부통제기준)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생활 지원과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토록 함<sup>15)</sup>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대상에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건 발의됨(윤창현 의원안, 제2120443호, 박덕흠 의원안, 제2121468호)

-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신탁 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상호금융으로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2022년 같은 취지의 개정안이 발의<sup>16)</sup>되었는데, 당시 행정안전부가 신용·공제사업 모두에 대해 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감독 및 제재 권한을 갖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의견이 있었음
- 윤창현 의원안은 농·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를 금융회사로 규정하여 규제를 적용하되 현재의 감독·법령체계를 존중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및 제재처분은 그대로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도록 특례를 두고자 함<sup>17)</sup>
  - 박덕흠 의원안은 농·수산업협동조합만을 금융회사에 추가하여 규제하는 내용으로 확대 범위가 보다 제한적임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대출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용보험(생명·손해)<sup>18)</sup>을 함께 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의 개정안이 발의됨(최승재 의원안, 제2121399호)

- 현행법상 대출계약과 연계하여 신용보험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sup>19)</sup>되고 있는바 금융소비자가 대출에 따른 위험관리 수단으로 신용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체결 시 신용보험을 판매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의 예외로 정하여 허용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는 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와 대출성 상품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소비자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불공정영업행위로 간주하되, 신용보험<sup>20)</sup>의 경우는 그 예외로 명시하고자 함
  - 한편, 2022년에도 같은 취지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sup>21)</sup> 동 개정안은 신용보험 권유행위를 부당권유행위 금지(법

14) 고상근(202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국회 정무위원회, p. 22

15) 참고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은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감독규정 제9조 제2항 [별표2] 8)

16) 김병욱 의원안(제2116173호)

17) 다만, 금융상품 판매 제한 및 금지명령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금융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함

18) 대출을 받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으로 잔존 부채를 변제하는 보험으로 유가족의 빚 대물림 또는 신용 하락을 방지하고 신용보강을 통해 대출금리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등 효용이 있음

19) ① 중소기업(및 그 대표자)·개인신용평점 하위 10%·피성년(한정)후견인과 체결한 계약 또는 ② ①을 제외한 계약 중 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매월 지급해야 하는 금액(예: 보험료)이 대출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제공받거나 받을 금액(예: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후 각 1개월 내에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금지됨(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 마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제4항 제1호)

20) 사망 등 보험사고 시 대출 금액 중 미상환 대출 금액의 전부·일부 상환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안 제20조 제2항)

21) 윤관석 의원안(제2113721호)

제21조)<sup>22)</sup>의 예외로 규정하되, 신용보험에 대한 규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대출 관련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20조 제1항)의 예외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신용보험 활성화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신용보험을 위험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취지 및 대출 관련 신용보험 권유를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는 방향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금융당국은 현행법규상으로도 신용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해 최근 민법이 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sup>23)</sup>
  - 국내외에서 신용보험 내지 신용보험과 유사한 채무면제유예상품 판매와 관련해 높은 수수료, 낮은 보장률, 판매 강요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난바, 신용보험 판매를 허용하는 경우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sup>24)</sup>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사료됨

○ 금융상품판매업자들에게 '장애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성실·정확하게 제공할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됨(양정숙 의원안, 제2123613호)

- 금융 피해에 취약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현행법에 따른 금융소비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제공 책무<sup>25)</sup>보다 한층 강화된 정보제공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금융상품 계약 단계에서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금융거래에 있어 장애인 보호 필요성은 인정되나, 장애인에 대한 보호 강화는 노인, 미성년자, 외국인 등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금융소비자와 관련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 사료됨<sup>26)</sup>

○ 금융회사가 이른바 횡재성 초과수익을 얻는 경우 초과이익의 일정 범위 내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됨(김성주 의원안, 제2125396호)

- 구체적으로는 금리변동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순이자수익이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임
  - 일정한 경우(대통령령에 위임)에는 이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징수된 기여금은 금융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함
- 개정안의 취지는 금융회사들이 외부적 요인(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고물가·고금리 상황 지속)으로 얻은 막대한 초과수익을 사회에 재분배함으로써 금융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동 개정안은 이른바 횡재세(Windfall tax)<sup>27)</sup> 논의와 관련된 것인바, 횡재세란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시장

22)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 행위를 금지함

23) 고상근(202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 <소비자신용보험 판매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의 예외로 규정>』, 국회 정무위원회, p. 13

24) 고상근(202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 <소비자신용보험 판매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의 예외로 규정>』, 국회 정무위원회, pp. 13~14; 이용준(202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 <금융분쟁조정중재원 설립 등>』, 국회 정무위원회, p. 10

25)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0조 5.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책무

26) 고상근(202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들에게 장애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금융 상품 정보를 제공할 책무 부과>』, 국회 정무위원회, pp. 8~9

27) Windfall은 바람에 떨어진 과실이라는 뜻에서 유래해 우발적인 소득이나 뜻밖의 횡재를 뜻함

요인(외부 사건)으로 인해 부당하게 높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간주되는 부분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것<sup>28)</sup>으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기업들이 벌어들인 큰 이익을 통제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에서 처음 도입<sup>29)</sup>됨

- 최근 국제유가 및 식량 가격 상승을 배경으로 유럽 주요국 및 미국 등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일부는 채택되는 등<sup>30)</sup>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도 현재 정유사와 은행 등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3건 발의되어 있음

-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사회적 기여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개정안과 같은 형태의 입법은 법률적, 시장적 측면에서 우려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임<sup>31)</sup>
  - 이중과세, 소급입법 등 위헌 소지가 있으며, 형평성 및 경직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에서도 횡재세 도입은 예측가능성을 위반한 것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및 실물경제 악영향을 경고한바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함
  - 아울러 횡재세는 해외에서도 소수 국가만이 채택하고 있는데, 주로 에너지기업이나 정유회사 등에 대해 일회적, 한시적으로 운영할 뿐 개정안과 같이 은행 등 금융회사만을 대상으로 영속적으로 적용하는 예가 없다는 점도 제시됨
- 개정안을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바, 금융당국, 금융업계, 학계, 소비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심도 깊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됨

○ 화상권유판매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판매를 금융상품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와 동일하게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됨(전봉민 의원안, 제2125622호)

- 구체적으로 (i) 화상통화, 컴퓨터시스템 등 매체를 활용해 상호 간에 대면하여 실시간 대화를 통해 계약체결을 권유하거나, 계약의 청약의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화상권유판매) 및 (ii) 기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함)에 대해 방문·전화권유판매 규제<sup>32)</sup>를 적용하는 내용임
  - 제안 취지는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라 화상통화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 활성화<sup>33)</sup>되고 있으므로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방식에 대한 규제 근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생각건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방문·전화권유판매 규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서 금융상품이 제외됨에 따른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인바, 방문·전화판매가 아닌 비대면 모집 전반에 동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됨
  - 특히 보험상품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입법 당시부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보험업법에서 비대면 모집 수단에 따라 특성에 맞게 규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8) 이세진·황성필(2023), 「횡재세 도입 논의의 현황과 과제」, 『이슈와 논점』, 제2076호, p. 1

29) 김재경·정훈(2023), 「초과이익과 횡재의 본질에 따른 과세체계 고찰」, 『조세법연구』, 제29-2호, pp. 353-354

30) 영국과 이탈리아는 석유사업 부문에 대해, 스페인과 헝가리는 은행까지 확대해 횡재세를 입법함(김신언(2023), 「우리나라 횡재세(windfall tax) 도입의 법리적 타당성과 입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2호, p. 7

31) 2023. 11. 28.자 정부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p. 38

32) 각주 4

33)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화상통화를 통한 모집이 허용되고 있음(영 제43조 제4항)

〈표 1〉 2023년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현황

번호	의안번호	의안명(대표발의자)	제안일자	주요 내용	진행 상황
1	2119010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2022. 12. 20	• 금융범죄 피해예방 교육 근거 마련	소관위심사
2	2119368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2023. 1. 9	• 금리인하요구권 등 행사방법 및 절차 설명의무	소관위심사
3	2120428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2023. 3. 6	• 금융취약계층 보호(차별금지, 정책수립, 피해 사례보고, 내부통제기준)	소관위심사
4	2120443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2023. 3. 6	• 상호금융업권 전체로 법 적용대상 확대	소관위접수
5	2121399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2023. 4. 14	• 대출계약 시 신용보험(생명·손해) 권유 허용	소관위심사
6	2121468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2023. 4. 20	• 농·수산업협동조합으로 법 적용대상 확대	소관위접수
7	2123613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2023. 8. 2	• 장애인 보호(성실·정확한 정보전달)	소관위심사
8	2125396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2023. 11. 14	• 횡재성 초과수익에 대한 기여금 부과·징수	소관위접수
9	2125622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2023. 11. 28	• 화상통화 등 활용 판매 규제 근거 마련	소관위접수